

현 행	개 정 안
<p>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일내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1.~4. (생략) <신 설> <신 설></p> <p>⑥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⑤포상휴가 1.~4. (현행과 같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p> <p>⑥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⑦퇴직준비휴가.....</p>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6. 2. 7.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1.15.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6. 1. 16.
 - 다. 상정일자 : 제36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96.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창수 청소과장)
 -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5.6.20.규칙 제2700호)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과태료처분통지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제5호(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 의한 신고 제외)를 포함시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토록 함.(안 제2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9조제2항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로 개정하는 것임.
 - 이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5.6.20. 규칙 제2700호)의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등의 업무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 및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박영길 위원) : 일반폐기물소각량에 대한 규제는 없는가?

○답변요지(김창수 청소과장) : 소각량과는 관계없이 시간당 200kg 이하 용량의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여 처음 소각할 때만 신고함.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1. 15.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1995.6.20. 규칙 제2700호)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과태료처분통지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제5호(단, 법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를 포함시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토록 함. (안 제29조제2항)

3. 개정근거

폐기물관리법(1993.3.6. 법률 제4541호) 제20조제3항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5호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과태료 부과 및 처분통지등) ①(생략)	제29조(과태료 부과 및 처분통지등) ①(생략)	제29조(과태료 부과 및 처분통지등) ①(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단,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외)		
③~④(생략)	③~④(생략)	③~④(현행과 같음)		

마포구중동경로당신축요구에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1996. 2. 10.
시민보건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 : 마포구 중동 81-21
성명 : 권영무외 89인

나. 소개의원 : 윤명규, 김유현, 한수균 의원
다. 접수일자 : 96. 1. 31.

라. 회부일자 : 96. 1. 31.